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29

발의연월일: 2021. 6. 17.

발 의 자 : 오영환 · 앙이원영 · 서영교

이병훈·송재호·박 정

김홍걸 • 박주민 • 장철민

이해식 · 안호영 · 임오경

김남국 · 김교흥 · 백혜련

양향자 • 김영배 • 홍기원

장경태 · 박홍근 · 임호선

아수진비 · 윤준병 · 이탄희

민형배 • 문정복 • 유정주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.

이번 사고는 현행법령 상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 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 건축물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·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,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(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).

법률 제 호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시간에는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0조의2(현장점검) ① 허가권 제30조의2(현장점검) ① 허가권 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 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하 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 하여야 한다. -----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제31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허가권자는 건축 지정 등) ① ----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 설기술 진흥법 | 에 따른 감리자 격이 있는 자(공사시공자 본인 및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)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 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

	된 자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
	작업 시간에는 상주하여 감리하
	<u> 여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